

의안번호	제 735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1년 5월 31일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제 735 호

제출연월일 : 2021년 5월 31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질병검사실 신축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 양돈 농가와 경기·강원 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지속 발생하고 최근 충청도 인접 지역 농가에 발생하고 있어,

◆ 발생 현황 : 양돈농가 17건, 야생멧돼지 1,414건 (21.5.12.기준)

□ 양돈농가 : 경기 9(파주5, 연천2, 김포2), 인천 5(강화5), 강원 3(화천2, 영월1*)

□ 야생멧돼지 : 경기 622(가평30, 연천409, 파주100, 포천83),

강원 792(철원36, 화천419, 양구70, 고성4, 인제78, 춘천160, 영월13, 양양8, 강릉3, 홍천1)

※ 충북 제천 인접지역인 강원도 영월 소재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21.5.5. 道 경계에서 150m 지점)

- 도내 가축질병검사실을 신축하여 신고 의심축의 신속·정확한 검사를 통해 재난성 가축질병 조기 색출과 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체계 구축하고자 하는 건임

- 현재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최종 확진 진단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경북 김천) 실시

- 현재 운영 중인 검사시설은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검사 공용으로 협소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시설 신축 필요

⇒ 검사시설 신축 및 진단기관 인증 획득 후 충청도 자체 최종 확진 가능

※ 국비 확정(21. 3.) : 경기, 충북

- 이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질병검사실 신축》

- 위 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구성리 421-15
(동물위생시험소 내 부지)
- 사업기간 : 2021. 6 ~ 2023. 9.
- 신축규모 : 건축 면적 1,080㎡(지상 3층)
 - 1층 (BL3실, 부검실, PCR장비실(유전자검사) 등)
 - 2층 (BL2실, 기계실, 준비실 등)
 - 3층 (사무실, 비품창고, 샤워실 등)
- 사 업 비 : 50억원(국비 50%, 도비 50%)
 - 건축공사비 4,385백만원, 부대비 589백만원, 예비비 26백만원

3.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2021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14-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건,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토지							
	건물	1건	1,080	5,000,000				
	기타							
1	토지							
	건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구성리 421-15	1,080	5,000,000	2023. 9.	가축질병검사실 신축		
	기타							
2	토지							
	건물							
	기타							
3	토지							
	건물							
	기타							
4	토지							
	건물							
	기타							
5	토지							
	건물							
	기타							

관계 법령 발 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p> <p>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p> <p>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p> <p>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p> <p>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p> <p>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p>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